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한 4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0. 00. ~ 1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한 4개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일부개정령안

제1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
다.

별지 제30호서식 첨부서류란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
로 한다.

제2조(「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
다.

제3조(「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유의사항란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
으로 한다.

제4조(「축산법 시행규칙」의 개정)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5. 18.>
제 호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자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취득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농지구분

취득 목적	
----------	--

귀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구청장 · 읍장 · 면장

직인

유의사항

- 1. 귀하께서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취득한 해당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11조제1항 또는 제63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거나 처분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귀하께서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4.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에 따라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제외합니다)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7. 5. 31.>

지리적표시 등록(변경)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등록 1년, 변경 90일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변경신청 시 등록품목과 등록번호를 본란에 기재				
등록신청 내용	품목				
	생산면적				
	ha				
	생산지역				
	생산량				
M/T					
포장 또는 가공공장 소재지					
변경신청 내용	기존 내용			변경내용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	한글명		「상표법」에 따른 출원 여부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영문명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산림청장·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신청)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생산계획서(법인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 3. 대상품목·명칭 및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 4.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 6.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7. 자체품질기준 1부 8. 품질관리계획서 1부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안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지식재산처에 제출한 서류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등록변경신청)	변경 사유 및 증거자료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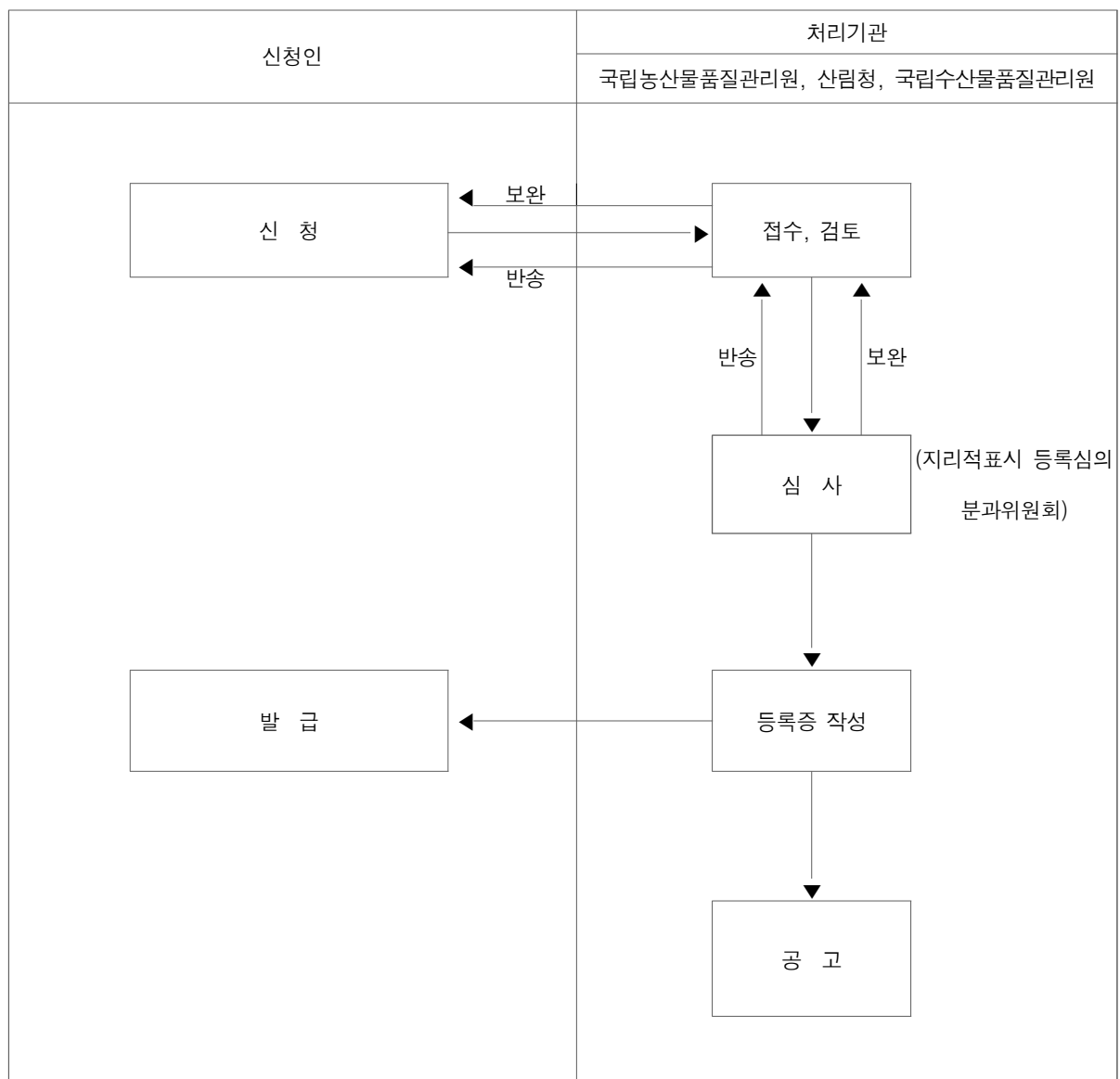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증질지 80g/㎡]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①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임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자가 「상표법 시행령」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2011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표시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① ----- ----- ----- ----- ----- ----- ----- ----- ----- ----- ----- ----- ----- <u>-지식재산처장</u> ----- ---- ----- ----- ----- ----- ----- -----

1. ~ 8.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u>특허청장</u>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1. ~ 8. (현행과 같음) ② ----- ----- ----- ----- <u>지식</u> <u>재산처장</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원제의 등록신청등) ①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3항에 따라 원제를 등록한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원제가 국 내에 최초로 등록된 원제에 해 당될 경우에는 <u>환경부장관</u> ·고 용노동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0조(원제의 등록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기후에너지환경</u> <u>부장관</u> ----- ----- -----.
제23조(농약등·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 이 경우 원제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u>환경부장관</u> 과 협의 하여 고시해야 한다. ④ (생략)	제23조(농약등·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기후에너지</u> <u>환경부장관</u> -----. ④ (현행과 같음)

축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의2(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
1. 기획재정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u>환경부장관</u> 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